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연구윤리 준수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계명대학교 대학원학칙시행세칙 제10장에 의거 학위논문 청구에 있어 연구자들의 바람직한 연구 활동을 통해 학문적 진실성 유지와 연구윤리 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0. 11.)

제2조(대상) 우리 대학교 대학원생의 학위논문 청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의무)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는 자는 학문의 창의적 연구를 통해 학문적 진실성에 입각하여 학위논문을 작성하여야 하며 연구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
2. 변조: 연구와 관련된 재료·장비·과정 등을 조작하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기록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3. 표절: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4. 대필: 논문의 제목, 목차설정, 논문내용, 자료의 분석 및 정리 등 논문 대부분을 타인에 의존하여 작성하는 행위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는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6.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7.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8.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제5조(연구윤리준수서약서 제출)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는 자는 연구 윤리를 준수하여 학위 논문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별지 제1호)를 작성하고,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학위청구논문 신청 기간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부정행위 조사 및 절차) ① 학위논문의 부정행위는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하고, 구체적인 부정행위 내용 및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장은 제보접수일로부터 15일내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부정행위가 사실인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대학원위원 3인과 해당분야의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약간 명 등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장은 대학원위원 중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③ 조사위원회는 조사 착수일로 부터 45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조사결과보고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학원장은 제6조 제3항의 조사결과보고서를 대학원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요청하

여야 한다.

⑤ 대학원위원회는 학위논문의 부정행위에 관한 조사결과보고서에 근거하여 학위논문 작성자 및 지도교수에 대한 징계 사항을 결정한다.

⑥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징계 결정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학위논문 부정행위자 등의 징계처분) ① 학위논문의 부정행위자가 재학생인 경우 대학원 학칙에 따라 징계하고, 수료생인 경우 대학원 위원회 결정에 따라 일정기간 학위청구 논문 제출 자격을 박탈한다.

② 학위논문 부정행위자의 지도교수에 대하여는 대학원위원회 결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지도교수 자격을 정지한다. 다만, 이미 논문 지도를 하고 있는 학생에 대한 지도 자격은 예외로 인정 한다.

④ 학위논문의 부정행위자가 학위를 받은 자인 경우 대학원 학칙에 따라 총장은 학위수여를 취소한다.

제8조(적용범위)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에 의한다.

부 칙

1. 이 내규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내규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개정지침은 2019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 1호]

학위청구논문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학위과정	박사(), 석사(), 통합()		학적	재학(), 수료()		학번	
학 과		성 명			연락처		

본인의 계명대학교 대학원생으로서 학위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연구윤리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만일 학위논문 작성에 위조, 변조, 표절, 대필 등의 학위 논문 부정행위가 밝혀질 때에는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연구윤리 준수 지침」에 따라 학위취소 처분 등 대학원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인)

본인은 위 학생의 지도교수로서 학위논문을 지도함에 있어서 연구윤리에 입각하여 철저히 지도할 것이며, 「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연구윤리 준수 지침」에 따라 책무를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20 년 월 일

지도교수: (인)

계명대학교 대학원장 귀하